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8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형수 · 김대식 · 조정훈  
송언석 · 임종득 · 고동진  
박성민 · 최형두 · 김도읍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

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5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u></p>